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. 1. 22 선고 2018가합242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

대한민국

피 고

안AA

변 론 종 결

2020.12.11

주 문

1.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5. 5. 7. 체결된 ○○○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○○○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(별지생략)